



창업지원단 운영규정

제정일	2014.11. 1
개정일	2020. 1. 1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창업지원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창업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 이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 (개정 2015. 6. 1)
2. 소관 창업보육센터, 창업교육센터 지원 및 평가 (개정 2015. 6. 1, 2020. 1. 1)
3.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(개정 2015. 6. 1)
4. (삭제 2015. 6. 1)
5. (삭제 2015. 6. 1)
6. (삭제 2015. 6. 1)
7. (삭제 2015. 6. 1)

제 2 장 조 직

제 3조 (조직 및 업무) ① 지원단은 본교 총장의 직속 기관으로 두며, 창업보육센터, 창업교육센터를 둔다. (개정 2020. 1. 1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(주사)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.

제 4조 (임명) ① 창업지원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.

제 5조 (매니저 및 연구원 등) 지원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니저 및 연구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6조 (운영위원회) ①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본교 소속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단장은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16. 3. 1, 2019. 3. 1)

③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6. 3. 1)
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지원단 매니저로 한다. (개정 2016. 3. 1)

제 7조 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원단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소관 창업보육센터, 창업교육센터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지원에 관한사항 (개정 2020. 1. 1)
3. 지원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지원단 및 소관 센터 운영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 (개정 2015. 6. 1)
6. 단장이 부의하는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(개정 2015. 6. 1)
7.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(개정 2015. 6. 1)
8. (삭제 2015. 6. 1)

제 4 장 보 칙

제 8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